

## 상 · 하수도설비공사업

### ■ 업무내용

- **상수도설비공사** : 상수도, 농·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, 농·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
- **하수도설비공사** :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

### ■ 등록기준

#### 1. 자본금

법인	개인
1.5억원 이상	1.5억원 이상

#### 2. 기술능력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기계·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	
기술사	용접, 농어업토목, 토목구조, 토질 및 기초, 도로 및 공항, 지질 및 기반, 토목시공, 토목품질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화약류관리
기능장	배관, 판금제관, 용접, 건축목재시공
기사	용접, 토목, 건설재료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콘크리트, 화약류관리
산업기사	배관, 굴착기, 판금제관, 용접, 토목, 건설재료시험, 토목제도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콘크리트, 건축목공, 화약류관리, 굴착
기능사	배관, 굴착기운전, 판금제관, 피복아크용접, 특수용접, 가스텅스텐아크용접,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, 건설재료시험, 전선용융토목제도, 측량, 콘크리트, 거푸집, 화약취급
기능사보	건축배관, 공업배관, 제관, 특수용접, 가스용접, 전기용접, 콘크리트, 거푸집, 굴착

※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#### 3. 공제조합

2025.05.13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C등급 이상	C등급
상·하수도설비공사업	950,392원	1.5억원	43좌 (40,866,856 원)	53좌 (50,370,776 원)
※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동일				

#### 4. 시설 · 장비

##### 사무실
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
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##### 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